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7.

발 의 자 : 박형수 · 김대식 · 조정훈  
송언석 · 임종득 · 고동진  
박성민 · 최형두 · 이달희  
김기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업의 양도,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,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.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,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

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 
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89조의2).

##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의2의 제목 중 “승계”를 “승계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”를 “제조업자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(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)와 수입자가”를 “제조업자등(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)이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89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(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)는 해당 제조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내역
2.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내역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신 설>

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)는 해당 제조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내역

2.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내역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.